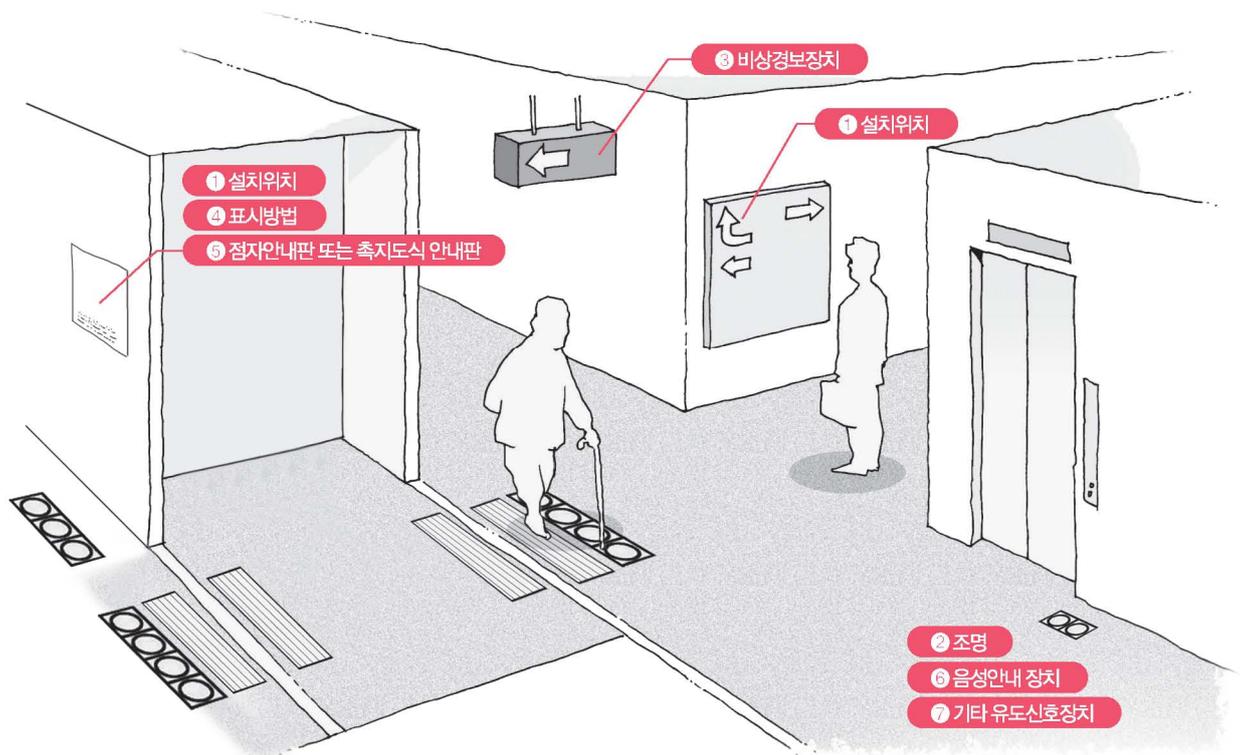


21. 안내표시 (시각장애인 유도·안내설비)



- 설치원칙** 건축물의 안내표시는 방문객을 목적지에 빠르고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. 시설이용자가 최소한의 이동으로 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정보전달이 정확하여야 한다.
- 설치요점**
 - 모두가 이용 가능한 종합안내장치여야 한다.
 -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 가능성 확보는 물론 청각, 언어장애인 등을 위한 문자,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, 음성안내 등이 효과적으로 조합되어야 한다.

1) 설치위치

-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주변색과 조화되면서 인지도가 높아야 한다.
- 문자, 기호, 그림 등이 주변의 색보다 밝기의 차이가 큰 것이 좋다.
-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휠체어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높이여야 한다.

2) 조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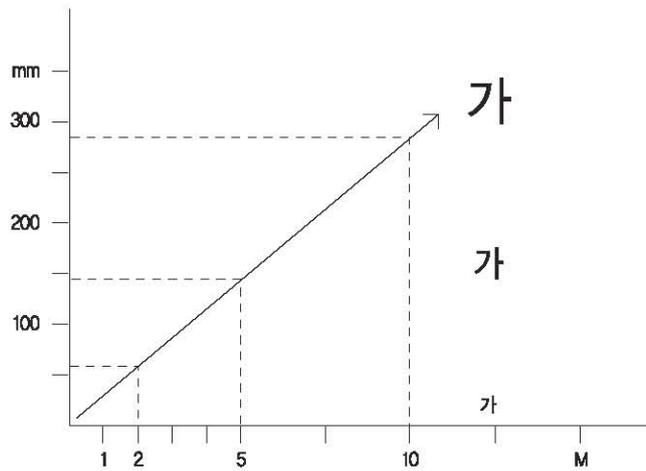
- 조명장치를 갖춘 안내표시는 명도의 차이를 더욱 크게 하여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.
- 조명장치를 하면 반사, 영락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.
- 조명으로 명도를 높이면 노인 등 약시자와 청각장애인에게 크게 유리하다.

3) 비상경보장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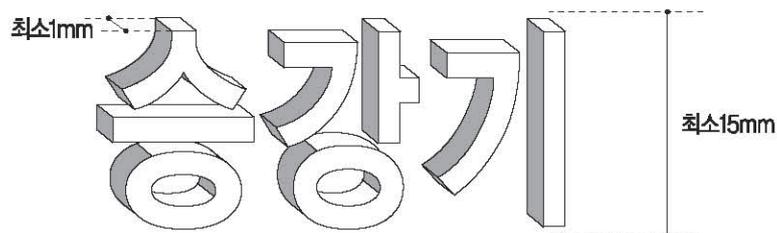
-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음성안내방송 및 음향경보장치가 있어야 한다.
- 청각장애인에게는 음향 경보장치가 효용이 없으므로 경광등이나 비상구 유도등에 점멸장치를 반드시 병행설치 하여야 한다.

4) 표시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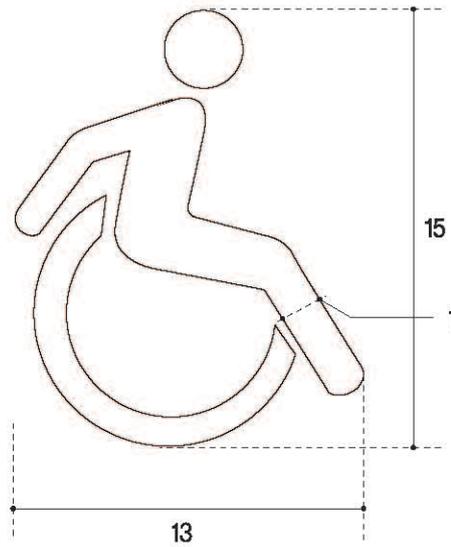
- 눈에 잘 띄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.
- 시각장애인에게 안내정보 전달방법은 음성안내, 점자안내, 촉지도 안내 등이 있다.
- 청각장애인 안내정보 전달방법은 전광게시판, 문자정보 모니터, 레이저 스크린 등이 있다.
- 장애인 심볼은 ISO, KS규격을 사용할 수 있다.



〈글자의 크기〉



〈안내표시 글자크기 기준〉



〈장애인 안내표시 작도방법〉



집단보청장치



청각장애인



난청인



시각장애인



안내견 허용



지체장애인



휠체어 사용자

〈장애 유형별 안내표시〉



〈장애인 안내표시 응용 사례〉

- 5)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
-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,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한다.
 - 일반 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설치한다.
 -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m~1.2m 범위 안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.
- 6) 음성안내장치
-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한다.
 -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신호장치는 음향·시각·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, 특수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.
 -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유도기는 무선규격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(KICS.KO-06.0046/R2)
- 7) 기타 유도신호장치
- 시각장애인의 접근 및 유도를 위하여 기타 유도신호장치는 시각장애인 전용 시설 및 복지관 등의 주출입구 부근에 설치할 수 있다.